

(앞쪽)

과세연도 · · · · · ·	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(갑)	법인명 (성 명)
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[단위: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(거주지국) 통화)], 통화 종류: ()

특정외국법인	① 법인명	② 업종
	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	④ 사업연도
	⑤ 소재지	

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	⑥ 자본금		⑦ 발행주식 수
	자기자본	납입자본	

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기준	주식 보유 (⑧≥50%)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)	구분	직접	간접	합계
		⑧ 주식 보유비율	%	%	%
		⑨ 공통의 이해관계		⑩ 실질적 지배관계	
		[] 예 [] 아니요	[] 예 [] 아니요		

⑪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	
---	--

판정 기준	최소금액	⑫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이익[별지 제31호서식(을)의 ⑩]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				[] 예 [] 아니요			
	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특정 외국법인 조세부담 (⑬≤「법인 세법」 제55 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 세율의 70%	⑬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[(⑮ + ⑯ + ⑰) / ⑭]			%	⑭ 최근 3개 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이익 합계			
		⑮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	세목		⑯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	세목			
			세액			세액			
		⑰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	세액		⑱ 적립금	의무 적립금			
	이월 결손금			임의 적립금					
	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	⑲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1호의 도매업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					[] 예 [] 아니요		
		⑳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제2호의 주식·채권의 보유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					[] 예 [] 아니요		
	소득기준	㉑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의 수동소득기준을 충족하여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					[] 예 [] 아니요		
	해외 지주회사	㉒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지주회사 등의 합산과세 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					[] 예 [] 아니요		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(거주지국)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,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(www.smbs.biz)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(예시: 미국 USD)로 작성합니다.

1. ① ~ ⑤: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,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.
2. ⑥・⑦: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(사업연도 말 기준)를 적습니다(예: 자기자본 = 자본금 계).
3. ⑧: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(병)의 ⑦란의 직접・간접・소계의 지분을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.
4. ⑨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・제4호에 따른 어느 한쪽과 다른 쪽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.
5. ⑩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 및 제4호 각 목에 따른 어느 한쪽과 다른 쪽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.
6. ⑪: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(병)의 ⑩란의 직접・간접・소계의 지분을 합계 값을 옮겨 적습니다.
7. ⑫: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[별지 제31호서식(을)]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 후 세전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.
8. ⑬: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[별지 제31호서식(을)]의 ⑩란 중 "조정 후 세전이익"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9. ⑭: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[별지 제31호서식(을)]의 ⑪ "납부세액"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10. ⑮: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[별지 제31호서식(을)]의 ⑫ "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"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11. ⑯: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[별지 제31호서식(을)]의 ⑬ "감소세액"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12. ⑰: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.

(앞쪽)

과세연도	. . . ~ . . .	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(을)			법인명 (성명)	
특정 외국법인	① 법인명		② 업종			
	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		④ 소재지			
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(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)						
[단위: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(거주지국) 통화], 통화 종류: ()						
⑤ 사업연도		해당 사업연도	직전 사업연도	전전 사업연도	합계	
		~	~	~		
⑥ 세전이익						
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평가손익	⑦ 가산					
	⑧ 차감					
	⑨ 조정					
⑩ 조정 후 세전이익 (⑥ + ⑦ - ⑧ ± ⑨)						
⑪ 납부세액	세목					
	세액					
⑫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	세목					
	세액					
⑬ 감소세액	세목					
	세액					

작성방법

※ 검은색 난(■)은 적지 않으며,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(거주지국)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,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(www.smbs.biz)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(예시: 미국 USD)로 작성합니다.

1. ① ~ ④: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,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. 이 경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적고,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세전이익은 "0"으로 적습니다.
2. ⑥: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세전이익을 각각 적습니다.
3. ⑦: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적습니다.
4. ⑧: 세전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적습니다.
5. ⑨: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적습니다(특정외국법인이 보유 주식등을 매각한 경우 또는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원래 차감했던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가산합니다).
6. ⑫: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.
7. ⑬: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,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

(앞쪽)

과세연도	~	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(병)	법인명 (성명)	
특정외국법인	① 법인명		② 업종	
	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		④ 소재지	

(1)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

구분	⑤ 내국인	⑥ 관계		⑦ 지분을 합계
		작성코드:	작성코드:	
성명				
주소				
사업자등록번호				
지분율 (%)	직접			
	간접			
	소계			

(2)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

구분	⑧ 내국인	⑨ 관계		⑩ 지분을 합계
		작성코드:	작성코드:	
성명				
주소				
사업자등록번호				
지분율 (%)	직접			
	간접			
	소계			

작성방법

- ※ 이 서식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의 특수관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※ "(1)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"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주주 중 내국인 및 내국인과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또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·출자지분을 50%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
- ※ "(2)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"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·출자지분의 직·간접 보유비율과 내국인과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의 특정외국법인 주식·출자지분의 직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%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. 이 경우 검은색 난(■)은 적지 않으며,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.

1. ⑤·⑧의 지분율: 해당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.
2. ⑥: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관계 또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의 관계 중에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.

내국인과의 관계	작성코드
6촌 이내 혈족	①-1
4촌 이내의 인척	①-2
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	①-3
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	①-4
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	②-1
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	②-2
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	②-3
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(출자지분 포함)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	③-1
제3자가 내국인과 어떤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	③-2
자본의 출자관계, 재화·용역의 거래관계,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 간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	③-3
자본의 출자관계, 재화·용역의 거래관계,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법인	③-4

3. ⑨: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중에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.

내국인과의 관계	작성코드
6촌 이내 혈족	①-1
4촌 이내의 인척	①-2
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	①-3
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	①-4
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	②-1
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	②-2
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	②-3

4. ⑨의 지분율: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.